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디자인 보호대상에 ‘건축물’ 포함 등〉

■ 김원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540호)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디자인 보호대상에 ‘건축물’ 포함 등(안 제2조제1호 등)	3
2. 실내장식 디자인 등록 신설(안 제42조의2)	9
3. 시행일(부칙 제1조)	13
※ 참고자료	14
1. 해외 입법례	14
2. 디자인권과 저작권 비교	1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원이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11. 13.
3. 회부연월일 : 2024. 11.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소상공인이 창업을 하거나 기업이 프랜차이즈 매장 등을 운영할 때 건축물의 외관과 실내장식(건축물 내부의 설비 또는 장식 등)은 매장 홍보와 고객유치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매장 등의 건축물은 해당 브랜드의 고유가치를 담아내고 영업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의 보호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음.

그러나 현행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은 물품, 글자체 및 화상(畫像·도형 및 기호 등)으로 한정돼 있어 건축물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건축디자인을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은 권리자가 모방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있음.

이에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을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에 포함

하도록 하여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 가. 디자인의 정의규정에 건축물을 포함하여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호).
- 나. 디자인의 보호 대상이 건축물까지 확대됨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도 디자인의 실시행위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2조제7호가목).
- 다. 점포, 사무소 기타 시설 내부의 실내장식을 구성하는 물품, 화상 또는 건축물에 관한 디자인은 실내장식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2 신설).
- 라. 제42조의2 신설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의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62조 및 제66조의2).

Ⅲ. 검토의견

1. 디자인 보호대상에 ‘건축물’ 포함 등(안 제2조제1호 등)

개정안은 디자인 보호대상인 ‘물품’의 범위에 ‘건축물(건축물의 부분을 포함한다)’을 포함하고(안 제2조제1호), 이에 따라 ‘실시’의 정의 중 물품의 생산에 ‘건축물의 건축’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가목).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畫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1. ----- --글자체, 화상(畫像) 및 건축물(건축물의 부분을 포함한다)----- ----- -----.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7.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7. ----- -----.
가. 디자인의 대상이 물품(화상은 제외한다)인 경우 그 물품을 <u>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u>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가. ----- ----- <u>생산(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을 말한다. 이하 같다)</u> ----- ----- -----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현행법¹⁾상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물품’²⁾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없으나 ‘물품’에 ‘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畫像)을 포함’하고 있어 일반적인 물품 개념보다는 그 의미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³⁾

이러한 디자인 보호대상은 1961년 「의장법」(현 「디자인보호법」) 제정 당시 ‘물건’으로 제한이 되었으나, 디지털 산업 등 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계의 요구와 국제추세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디자인 보호대상이 물건이 아닌 ‘글자체 및 화상’까지로 확대되었음.⁴⁾⁵⁾

1)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畫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 2) **사전적 의미의 물품**이란 일정하게 쓸 만한 값어치가 있는 물건,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유체물(有體物)을 말함(네이버 국어사전 참고). **디자인심사기준**은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라 함은 독립거래가 가능한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음.
- 3) 디자인 분야는 크게 제품, 시각, 환경디자인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디자인업계에서 인식하는 디자인의 범위와 디자인보호법에서 인정되는 디자인 범위는 다름. 산업상 유용한 미적 창작물에 대하여 넓은 의미에서 디자인에 해당하여도 물품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함(「디자인보호법에서의 물품 개념의 재검토」,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제16권제1호(2021.3.), 안원모).
- 4) 디자인의 보호대상 확대 관련 디자인법 개정연혁

시행일자	1961.12.31.	1974.1.1.	2001.7.1.	2005.7.1.	2021.10.21.
보호대상	물건	물품	물품의 부분 추가	글자체 추가	화상(畫像) 추가

5) 구체적으로, 디자인등록이 가능한 구체적인 물품류는 현행법 제40조제2항(*)에 근거하여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음.

(*) 「**디자인보호법**」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②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 따라야 한다.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물품류 구분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물품류 구분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협정」(이하 “로카르노 협정”이라 한다) 제1조(3).(i)(제32류^(*)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물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물품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그런데 건축물 외형과 인테리어가 매장 등 상업시설의 홍보·고객유치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건축물과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畫像)’을 포함한 물품성 요건을 전제로 하고 있어 건축물이나 인테리어 디자인의 경우 디자인등록이 제한되고 있음.⁶⁾

예술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디자인’이나 ‘인테리어 디자인’의 경우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아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나⁷⁾⁸⁾ 이는 예술품의 자격으로서 보호하는 것으로 기능적·실용적 건축물 보호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⁹⁾

(*) 32류(그래픽 심벌, 로고, 표면문양, 장식) (**) 디자인 물품류별 물품목록 고시 제2024-1호

6) 다만, 최종적으로 토지에 정착하여 부동산이 되는 것이라도 공업적으로 양산되고 운반 가능하며 유통과정에서 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은 물품으로 인정됨(방갈로, 공중전화박스, 이동판매대, 방법초소, 승차대, 교량, 이동화장실, 조립가옥 등).(출처: 디자인심사기준, 특허청예규).

7)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 4. (생략)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8) <최근 4년간 건축저작물 등록 현황>

년도	2017	2018	2019	2020
등록건수	71건	62건	54건	76건

<최근 3년간 인테리어 관련 도형저작물 등록 현황>

년도	2019	2020	2021.1~8.10.
도형저작물 등록 건수	0건	27건	1건
미술저작물 등록 건수	0건	1건	0건
합계	0건	28건	1건

9) 저작권과 디자인권 비교

구분	보호대상	보호범위	미등록 보호 여부	비고(소관 부처)
저작권	창작물 그 자체	창작자의 권리	○(단, 본인이 입증)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자인권	물품+디자인	특정 물품에 입혀진 디자인(동일+유사성)	X	특허청

2018년도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2018. 7. 18. 시행)을 통해 간판, 실내장식 등 영업의 전체적인 외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으나¹⁰⁾ 동 법률에 따라 보호받기 위해서는 식별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¹¹⁾

한편,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건축물과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고유가치를 인정하여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¹²⁾ 우리나라에서도 건축물과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권리 보호 강화 측면에서 국내에 디자인으로 등록하여 디자인권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관련 업계의 요구가 있음.¹³⁾

이에 개정안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건축물’을 포함하여 건축물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10)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 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

11) (부정경쟁방지법 보호의 한계) 간판, 실내장식 등 영업의 전체적인 외관(소위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을 것과 같은 식별력을 요구(§2.1. 나목)하므로, 단기간 홍보된 창작물은 보호 한계가 있음. 또한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물’ (§2.1. 파목) 입증의 어려움이 존재함.

12) 참고자료 1. 해외 입법례

13) 관련 업계(*) 대상 설문조사 결과, 다수가 건축물 및 인테리어 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함(출처: 특허청 연구용역보고서 「인테리어 디자인 보호 강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 방안 연구」. 2021.10.,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한건축사협회 등 관련 업계, 건축사사무소 등 건축물 디자인업계, 인테리어 디자인업계

다만,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성립 요건으로 ‘물품성’을 원칙으로 하면서 물품성이 없는 대상까지 물품에 포함하도록 하는 점에서 법이념과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¹⁴⁾도 있는바,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 간의 관계,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균형 등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¹⁵⁾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건축저작물’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축물 디자인’을 「디자인법」상의 보호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건축저작물과 중첩되어 양 법률에 따른 권리 간의 모순·저촉 문제¹⁶⁾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이러한 중첩 보호와 관련하여, 특허청은 ① 권리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② 디자인은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권리가 인정되고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에만 효력¹⁷⁾이 발생하므로 디자인권의 효

14) 현재의 법체계를 유지하면서 물품성 요건을 탈피하는 것은 법이념과 체계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법, 예를 들면 저작권법이나 상표법과의 저촉 문제를 심화시켜 종국에는 산업질서의 혼란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출처: 「디자인 보호범위의 확대와 한계」 p103, 2012년 12월,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재권).

15)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 출현과 그 보호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물품을 떠난 디자인에 대한 보호범위 확대라는 입법시도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간 생략) 특히 물품성 완화 내지 예외의 추가에 따른 디자인 보호영역 확대와 공중의 자유이용 대상 자체의 축소라는 결과가 가져오는 디자인 자유이용영역의 축소라는 상반된 이해관계의 조정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법익균형을 고려한 입법정책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도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에 비추어 향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디자인보호법상 화상디자인의 보호와 2021년 개정법의 비판적 검토-일본의 2019년 개정 의장법과 대비를 중심으로-」 (2021. 6. 16. 차상욱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

16) 예컨대, ▲저작권법상 침해라고 볼 수 없는 행위가 디자인보호법상 침해가 되는 경우, ▲저작권법상 보호기간이 살아있으나 디자인보호법상 보호기간이 소멸하는 경우 등

17) 여기서 ‘업’이란 일정한 목적하에 계속하여 행하는 유기적 활동으로서 사업을 의미하고, 또한

력이 미치는 저작물은 제한적이며,¹⁸⁾ ③ 침해입증에 어려움이 있는 저작권에 비해 디자인권은 등록을 통해 배타적 독점권이 인정되는 등 보호수단이 강력하고, 양 권리간의 요건과 효력이 상이¹⁹⁾하므로 권리가 적합한 권리를 선택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업으로서’라는 것은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함.

(*) 「디자인보호법」 제92조(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단서 생략)

18) 「디자인보호법」상 공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창작성을 갖춘 디자인만이 권리로 인정되어 보호되고, 침해 여부 판단 시에도 적용되는 기준이 저작권과 다르므로, 디자인권은 저작권과 성격이 다른 권리임

19) 참고자료 2. 디자인권과 저작권 비교

2. 실내장식 디자인 등록 신설(안 제42조의2 신설 등)

개정안은 실내장식을 구성하는 물품, 화상 또는 건축물에 관한 디자인이 실내장식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에는 1디자인²⁰⁾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안 제42조의2 신설),

동 규정을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및 ‘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사유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62조 및 제66조의2).

[표 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① 심사관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제4항,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 따라 디	제42조의2(실내장식 디자인) 점포, 사무소 기타 시설 내부의 설비 또는 장식(이하 “실내장식”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물품, 화상 또는 건축물에 관한 디자인은 실내장식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에는 1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 ----- 제42조까지, 제42조의2 -----

20) ‘1디자인’이란 원칙적으로 1물품의 1형태를 의미함.

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생략) ②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27조,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2호만 해당한다), 제34조, 제37조제4항 및 제39조부터 <u>제42조까지</u>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생략) ③ ~ ⑤ (생략) 제66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①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결정을 한 출원에 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디자인등록결정을 취소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다시 심사(이하 “직권 재심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절이유가 제35조제1항, 제37조제4항, 제40조부터 <u>제42조까지</u>에 해당하는 경우 2. 3. (생략) ② 3. (생략)	----- ----- 3. (현행과 같음) ② ----- ----- ----- -----. 1. (현행과 같음) 2. ----- ----- ----- <u>제42조까지, 제42조의2</u> ----- -----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6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① ----- ----- ----- ----- ----- ----- ----- -----. 1. ----- ----- <u>제42조까지 및 제42조의2</u> ----- 2. 3. (현행과 같음) ② 3.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상 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 1출원주의를 원칙으로 하되,²¹⁾ 이에 대한 예외로 같은 류(類)에 속하는 물품은 100개까지 복수디자인 등록출원을 허용하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²²⁾²³⁾과 2 이상의 물품이 한 별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어 통합적 미감을 발생시키는 경우 한 별 물품 디자인전체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 별 물품의 디자인 제도’²⁴⁾²⁵⁾를 두고 있음.

개정안 제2조제1호에서 물품의 범위에 ‘건축물’을 포함하여 ‘건축물과 그 부분’ 디자인을 보호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실내장식 디자인이 디자인의 보호대상에 해당하는지²⁶⁾와 이를 ‘1디자인 1출원주의’나 ‘한 별 물품의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을

21) 「디자인보호법」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① 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 따라야 한다.

22) 「디자인보호법」

제41조(복수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서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1 디자인마다 분리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23)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 1출원 원칙에도 불구하고 100개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에는 반드시 같은 물품류에 속해야 함. 여기에서 같은 물품류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구분에 따른 물품의 종류를 말하는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구분이란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 구분(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르며, 각 물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물품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현재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물품류는 총 31류로 나누어져 있음.

24) 「디자인보호법」

제42조(한 별의 물품의 디자인) ① 2 이상의 물품이 한 별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그 한 별의 물품의 디자인이 한 별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에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 별의 물품의 구분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25) 예를 들면, 한 별의 반창고 세트, 한 별의 스키복 세트, 한 별의 머리빗 세트, 한 별의 필기구 세트, 한 별의 책상과 책꽂이 세트 등이 있을 수 있음.

26) 인테리어 디자인은 건축물의 내부에 관한 부분디자인의 형식으로 보호될 수도 있을 것임(출처: 「인테리어 디자인의 보호체계 및 보호범위 연구」 236페이지, 2011. 9월, 특허청 연구용역, 주관연구기관: 유미특허법인).

수 있음.²⁷⁾

일본의 경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19년도에 「의장법」을 개정하여, 내장(内粧) 디자인²⁸⁾을 1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일본 사례를 참고하여 실내장식 디자인을 1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실내장식 디자인의 디자인등록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 제42조의2 중 “물품, 화상 또는 건축물”은 물품의 정의에 이미 ‘화상과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물품”으로 수정하고, “등록”의 경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디자인등록”²⁹⁾으로 명확하게 하는 등의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임.

27) 특허청은 제2조의 정의규정에 포함된 ‘건축물’은 구조물을 의미하고, 실내장식 디자인은 점포, 사무소, 시설 등 건축물 내부임을 나타내는 벽, 바닥, 천장 등과 가구, 집기 등 물품의 배치 등이 조합된 전체적인 구성이 창작성이 있을 때 보호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규정하고, 1디자인 1출원주의의 예외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8) 일본 「의장법」

(제8조의2) 점포, 사무소 기타 시설 내부의 설비 또는 장식(이하 「내장」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물품, 건축물 또는 화상에 관한 의장은 내장 전체로서 통일적인 미감을 일으키는 때는 1의장으로서 출원을 하고,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2019.5. 개정, 2020.4.1. 시행).

29)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 4. “디자인등록”이란 디자인심사등록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을 말한다.

3. 시행일(부칙 제1조)

개정안 부칙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통상의 개정안에 비해 장시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는 디자인 보호대상인 건축물의 경우 공사 기간이 길고 투입되는 비용이 커서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폐기의 경우에도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됨.

문 의 처
02)6788-5468

참고 1

해외 입법례

관련법	조문내용
미국 특허법	제171조 물품을 위한 새롭고 독창적이며 장식적인 것
유럽연합 공동체 디자인법	(제4조) 본 규정의 목적상,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2) ‘제품’이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공업제품 또는 수공업품을 의미하며, 물리적 물체에 구현되어 있는지 또는 비물리적 형태로 구체화되어 있는지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 (a) 패키징, 한 벌의 물품, 내부 또는 외부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제품의 공간적 배열, 복합제품으로 조립하기 위한 부품, (b) 그래픽 또는 기호, 로고, 표면패턴, 글자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본 의장법	제2조(정의) ① 물품(물품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형상, 모양 또는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건축물(건축물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형상 등 또는 화상(기기의 조작용으로 제공되는 것 또는 기기가 그 기능을 발휘한 결과로서 표시되는 것에 한하고,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제8조의2 점포, 사무소 기타 시설 내부의 설비 또는 장식(이하 「내장」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물품, 건축물 또는 화상에 관한 의장은 내장 전체로서 통일적인 미감을 일으키는 때는 1의장으로서 출원을 하고,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참고 2

디자인권과 저작권 비교

구분		디자인권 (Design Right)	저작권 (Copyright)
보호목적		○ 디자인의 창작 장려 ⇒ 산업발전에 기여	○ 저작자의 권리와 인접권리 보호 ⇒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발전
보호대상		○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문학, 음악, 미술 등) ※ 디자인창작의 경우 응용미술저작물
성립요건		○ 공업상 이용가능성 ○ 신규성(Novelty) ○ 창작 비용이성(Creativity)	○ 독창성(Originality)
권리발생		○ 방식주의(심사 후 등록) ○ 등록 ⇒ 권리발생	○ 무방식주의(창작순간 자동발생) ○ 등록 ⇒ 제3자 대항력, 추정력
권리내용	인격권	○ 인격권(人格權) 불인정	○ 인격권 인정(양도 불가능)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재산권	○ 절대적 독점배타적인 실시권 ○ 속지주의	○ 모방금지권, 상대적 배타권 ○ 국제주의(베른협약)
보호기간		○ 출원일로부터 20년	○ 저작자 생존기간 + 사망 후 70년 ※ 인격권은 저작자에게 인신전속
타법 등과의 권리조정		○ 이용·저촉관계 ※ 저작물을 이용한 디자인권을 실시하려면 저작자의 허락필요	○ 없음 ※ 응용미술저작물과의 권리조정 규정 없음
효력제한		·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실시 ·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 등의 장치 기타의 물건 · 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 공정이용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비영리 목적의 공연, 방송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등
권리구제수단		○ (민사구제) 업으로서의 사용요건 - 침해금지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	○ (민사구제) 업으로서의 사용요건 × - 침해금지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
		○ (형사구제) 침해죄(반의사불벌죄)	○ (형사구제) 침해죄(친고죄 원칙. 다만, 예외적으로 반친고죄 적용)
국제조약		· 파리조약 · 헤이그 협정 · 로카르노 협정	· 베른조약, 세계저작권 조약(UCC) · 제네바 음반 조약, 로마조약 · WIPO 저작권조약(WCT) · WIPO 실연·음반조약(WPPT)
		· WTO/TRIPS, FTA	
중첩보호		- 응용미술저작물의 경우 판례상 디자인권과 저작권의 중첩보호 인정 ※ 응용미술저작물: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separability test)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	